

의안번호	2217415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6. 4. 8.
추 계 번호	26B141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함(제1항) <u><삭 제>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의무규정
2	안 제27조의5(재혼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특례) 신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안 제27조의5(재혼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특례)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제외 등(안 제27조의4 및 안 제27조의5)

- 현행법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²⁾에게 유족연금³⁾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지급인원 수	263	276	294	318	342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배우자의 수	252	265	283	303	326
총 지급액	3,294	3,685	4,096	4,538	4,973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	3,169	3,543	3,956	4,367	4,78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65세가 되었을 때
 -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5. (생략)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 개정안은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를 제외하는 한편, 해당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려는 것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됨
 - 개정안 시행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유지됨. 다만, 해당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 건수 및 해당 배우자의 혼인기간·유족연금 수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향후 발생할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 건수 및 해당 배우자의 혼인기간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유족연금 수급액은 수급권자별로 상이하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6년 4월 현재)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